

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

방송통신위원회

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

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2(자료제출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광고판매대행자 또는 방송사업자에게 업무 및 경영상황에 관한 장부·서류, 전산자료·음성녹음자료·화상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

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1. 금지행위 관련 사건명과 사건번호
2. 자료를 제출할 자
3. 제출할 서류, 물건 등 자료
4. 제출기한과 장소
5. 제출방식
6.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재 내용

③ 광고판매대행자 또는 방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제2항제4호의 제출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광고판매대행자 또는 방송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방송통신

위원회에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,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제출기한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.

제23조의 [별표 4] 2. 개별기준의 ‘다’ 목과 ‘라’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회	2회	3회
다. 법 제15조 제3항 또는 제36조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	법 제44조 제1항제3호	700	850	1000
라.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정리하거나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장부나 근거자료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	법 제44조 제1항제4호	700	850	1000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0조의2(자료제출)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광고판매대행자 또는 방송사업자에게 업무 및 경영상황에 관한 장부·서류, 전산자료·음성녹음자료·화상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</u> <u>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</u> <u>1. 금지행위 관련 사건명과 사건번호</u> <u>2. 자료를 제출할 자</u> <u>3. 제출할 서류, 물건 등 자료</u> <u>4. 제출기한과 장소</u> <u>5. 제출방식</u> <u>6.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재 내용</u> <u>③ 광고판매대행자 또는 방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2항제4호의 제출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광고판매대행자 또는 방송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</u>

	<u>로 제출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,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제출기한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.</u>
--	---

[별표 4]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23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.

나. 방송통신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. 다만,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
다.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채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- 1) 위반행위자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2)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
- 4) 그 밖에 위반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회	2회	3회
가. 법 제9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44조 제1항제1호	500	750	1000
나. 법 제14조에 따른 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44조 제1항제2호	700	850	1000
다. 법 제15조 제3항 또는 제36조에 따른 자 료제출을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	법 제44조 제1항제3호	700	850	1000
라.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정리 하거나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장부나 근거자료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	법 제44조 제1항제4호	700	850	1000
마. 법 제37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	법 제44조 제1항제5호	700	850	1000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시장조사과	
연 락 처	(02) 2138 - 1523